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안

(의안번호 제80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8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3. 19
다. 상정·의결일자 : 2003. 3.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고성읍이 고성군 배후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등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자생력 및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공간적 범위 : 고성읍 행정구역 전역 43.98km²
○ 시간적 범위 : 1단계(2003~2005년), 2단계(2006~2012년)
○ 내용적 범위
 - . 고성읍의 현황과 개발여건의 분석, 기본적 발전테마 설정
 - . 발전테마의 가시적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 . 전체 투자규모와 재원조달계획
 - . 분야별 개발효과(기대효과)의 분석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우리군 고성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정된 지방소도읍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수립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이 지원됨.
-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2003년 1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180일 기간으로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종합육성계획은 해당 소도읍이 발전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정리한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정도의 장기적 발전 계획이라고 볼수 있으며,
- 본전 계획안은 종합육성계획의 범위내에서 최초 3년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자치부 공모에 응하는 제안서 성격을 갖는 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계획수립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읍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전체적으로 정주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전체적인 종합육성계획이 나오기 전인데 응모 기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은지?
- 답 : 기히 세워 두었던 기본 청사진 내에서 계획된 것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봄.
- 문 : 행자부의 예산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사업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 답 :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음.
- 문 : 도시테마 조성계획 부분중 고성 오광대 전수회관과 탈박물관이 동일 지역에 설치되는지?
- 답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실시하게 됨.
참고로 1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본 기간내 시행할 사업 위주이며, 2단계 사업은 2012년 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추진되어야 할 계획임.
- 문 : 지역경제 기반 육성 계획부분의 율대농공단지 확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추진하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협의한 바 있는지?
- 답 : 사업계획 지침에 지정된 소도읍 지역내에 기존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 확충계획이 따르도록 되어있어 본 확충계획이 포함된 것임.
확충되는 부분의 인접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한바도 있음.
- 문 : 주민소득을 올릴수 있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혹은 스포츠 관련 등의 계획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답 : 고성읍 지역만이 대상이 되므로 계획에 한계가 있음.
향후 우리군 전체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3.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